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운용 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의 활성화, 개발 성공률 향상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제기된 개선요구사항의 반영, 신설된 재도전 절차 추가 및 각종 업무 처리 기준의 명확화

□ 주요 개선요구 사항

- 개발 성공률 향상을 위해 SE적용 및 업체선정 기준 강화
- 각종 평가 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 과제선정과정에서 RFP내용 충실화
- 체계업체 참여 확대

2. 주요내용

가. 각종 평가절차 및 기준 개선

- 1) 주관기업 선정 시 탈락 기준 상향 조정(60점 → 70점)
- 2) 각종 평가 절차 및 기준 구체화 개선(제14, 15, 16조, 22조, 24조)
 - ① 평가위원 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최소, 최대값 제외
 - ② 평가팀 구성 기준, 평가기준 개선
 - ③ 평가수행절차 및 결과 통보 등 실행절차 구체화

나. SE 적용절차 구체화 등 개발관리강화 및 양산공정 개발요구도 추가

- 1) 업체의 월간진도보고서 작성, 개발관리자의 분기 단위 점검절차 추가(제22조)
- 2) SE 관련사항 및 양산공정 개발 요구도 추가(별지 1-1, 3-2, 4-5, 4-6)
 - * SE 관련사항 : 협약서, RFP, 중간 및 최종평가요소, 최종보고서 반영
 - * 양산공정 : RFP, 최종보고서, 최종평가요소로 반영
- 3) 연구기자재 관리절차 구체화(제28조, 별지 2-1, 3-1, 3-2)
 - * 1천만원 이상 구매·제작 시 관리포찰 등록, 3천만원 이상시 NTIS등록의무화 및 중간·최종보고서, 성과 관리 항목에 포함

다. 협약 및 과제수행계획서 변경 절차 구체화(제20조, 21, 22조, 별지2-1)

- * 협약의 변경, 해약, 과제수행계획서의 변경절차 및 관련양식 보완
- * 협약문의 개발대상 명확화, 규정 개정 사항반영 및 ‘갑’, ‘을’ 등 표현 보완

라. 과제발굴, 소요조사 절차 구체화

- ① 과제 발굴 시 인센티브 지급시기 및 대상 구체화(제10조)
 - * 방사청 훈령에 따라 기품원 국산화 업무 담당자 제외, 과제선정 시 지급
- ② 과제 선정 시 검토절차 강화(제11조)
 - * 체계업체 등의 RFP 적절성 및 협력비용 검토, 자체 검토 심의 추가 등

마. 제도전 제도 신설에 따른 절차 추가(제25의 1조)

바. 별지 서식 호수 재조정, 인용조항 오기 사항수정

- ① 조항 및 별지 조정에 따른 조정
 - * 세부 내역은 별첨(P. 16.) 참조
- ② 방사청 훈령 인용조항 및 내용오류 사항 반영(제10조, 11조, 19조, 20조, 21조)

사. 개발비 산정 기준 추가 및 집행기준 등 보완 등 전면개정

- ① 개발비 산정 기준 추가
- ② 개발비 집행 기준 보완 및 구체화
 - *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RCMS관련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사항 등 반영
- ③ 규정 본문에 관련 조항 추가 및 협약서의 부록에서 본문의 별표로 조정(제29조, 별표 3)
 - * 규정 체계 상 규정 본문 및 별표로 구성이 적절함

아. 문구 수정 및 구체화

- * 조문 내용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의 문구와 오기사항을 수정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고
<p>제4조 (업무분장)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p> <p>1. 정책·예산 담당부서 가. 사업부서 운영예산 계획 검토 나. 기술료 사용 계획에 대한 검토</p> <p>2. 재무관리 담당부서 가. 사업비 및 기술료에 대한 회계업무 나. 사업 운영을 위한 원인행위, 출납, 결산 등 회계업무 다.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및 규격화 관련 기술지원에 대한 기술용역 계약</p> <p>3~5 (생략)</p>	<p>제4조 (업무분장)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p> <p>1. 정책·예산 담당부서 가. 사업부서 운영예산 계획 검토 나. 기술료 사용 계획에 대한 검토</p> <p>2. 재무관리 담당부서 가. 사업비 및 기술료에 대한 회계업무 나. 사업 운영을 위한 원인행위, 출납, 결산 등 회계업무 <삭 제></p> <p>3~5 (현행과 동일)</p>	<p>업 체 부 담 축 소 및 전 순 기 에 결 친 개 발 관 리를 위 해 사 업 비 에 개 발 관 리 비 반 영 및 별 도 용 역 폐 지 (19조 참조)</p>
<p>제8조(부품국산화 과제 평가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② (생략)</p> <p>③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해당 사업 부서장(사업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서 기술진흥센터장이 지명하는 자로 선정한다.</p> <p>1. 국산화개발관리 담당 및 해당 팀장 2. 본부 및 지역센터 전문가 3. 국방부, 방사청, 각군 및 산학연 관련 전문가 등</p> <p>④~⑨ (생략)</p>	<p>제8조(부품국산화 과제 평가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② (현행과 동일)</p> <p>③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u>기술진흥센터 실장 중에서</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서 기술진흥센터장이 지명하는 자로 선정한다.</p> <p>1. 국산화개발관리 담당 및 해당 팀장 2. 본부 및 지역센터 전문가 3. 국방부, 방사청, 각군 및 산학연 관련 전문가 등</p> <p>④~⑨ (현행과 동일)</p>	<p>객 관 적 평 가 를 위 해 위 원 장 대 상 을 확 대</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0조(지원사업의 과제 소요조사 등) 지원사업의 과제 소요조사 등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를 따른다.</p> <p><신설></p>	<p>제10조(지원사업의 과제 소요조사 등) ① 지원사업의 과제 소요조사 등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를 따른다.</p> <p>② <u>과제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과제가 국산화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될 경우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사업주관부서 또는 사업담당부서에서 국산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경우는 제외하며, 인센티브 액수는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u></p>	<p>조항 추가에 따른 항목 번호 추가</p> <p>인센티브 지급시기, 방법 및 대상 명확화</p>
<p>제11조(지원사업 과제 발굴 및 검토) ① 사업수행 담당부서(지역센터 기술팀, 사업 주관부서)는 지역별 과제제안서를 접수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제안서[별지 1-1]를 작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방사청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제3장 (개발절차) 제18조(개발 타당성 검토 및 개발 대상품목 선정)를 적용한다.</p> <p>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유사 과제를 검색한다.</p> <p><신설></p>	<p>제11조(지원사업 과제 발굴 및 검토) ① <u>사업주관부서는 공모, 소요제기를 통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제안서[별지 1-1]를 작성한다.</u></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1. 방사청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제18조 ①항 및 ②에 따라 <u>관련기관에 개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한다.</u></p> <p>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유사 과제를 검색 <u>중복여부를 확인한다.</u></p> <p>3. <u>체계업체 또는 부체계업체에 과제제안서 내용 적절성 검토와 기술지원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수행 예상 소요 비용 산출을 요청한다.</u></p>	<p>과제 발굴 방법 명확화</p> <p>중복성, 타당성 검토절차 구체화</p> <p>과제제안서 충실화를 위한 검토절차 구체화 및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신설></p> <p>3. 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검토결과 및 과제 제안자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과제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한다.</p> <p>④ (생략)</p> <p>⑤ 사업주관부서는 지원대상 과제의 요구 시설 및 장비, 개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원대상 과제에 한하여 대기업의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 공고 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p>	<p><u>4. 과제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u></p> <p><u>④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과제로소에 대하여 과제추천여부, 추천대상과제의 추천순위 및 중소기업의 수행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때 사업주관부서는 제3항의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과제제안자가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u></p> <p><u>⑤ 사업주관부서는 과제평가심의 결과를 제3항 3호의 종합결과와 함께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한다.</u></p> <p><u>⑥ (현행 4항과 동일)</u></p> <p><u>⑦ 사업주관부서는 지원대상 과제의 요구 시설 및 장비, 개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원대상 과제에 한하여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 공고 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u></p>	<p>과제제안서 충실화를 위한 검토 절차 구체화 및 추가</p> <p>방사청 제출자료 구체화</p> <p>항목조정 항목조정 방사청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벤처별도 구분폐지 및 중견기업 구분)</p>
<p>제13조(과제수행계획서 제출·접수)</p> <p>① 사업주관부서는 제12조에 따른 소요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과제수행계획서[별지 제1-2호]를 제출받아 주관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를 준비한다.</p>	<p>제13조(과제수행계획서 제출·접수)</p> <p>① 사업주관부서는 제12조에 따른 소요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과제수행계획서[별지 제1-2호]와 <u>세부현황[별지 제1-2-1 내지 제1-2-7]과 공동개발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1-3],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별지 1-4], 기술협력 의향서[별지 1-5] 및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u></p>	<p>과제수행 계획서를 세분화 및 제출서류 서류 구체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별지 1-6] 를 제출받아 주관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를 준비한다.</p>	
<p>제15조(과제수행계획서 서면평가) 사업주관부서는 제14조의 신청업체 자격여부 검토여부 적격업체에 대하여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과제수행계획서의 충실성, 개발자금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별지 4-1]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를 구분한다.</p> <p>1.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p> <p>2.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심의회에서 결정된 업체들을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p>	<p>제15조(과제수행계획서 서면평가) 사업주관부서는 제14조의 신청업체 자격여부 검토여부 적격업체에 대하여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과제수행계획서의 충실성, 개발자금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별지 4-1]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를 구분한다.</p> <p>1.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p> <p>2. 평가위원 평점이 7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심의회에서 결정된 업체들을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p>	<p>기준명확화 (위원별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적용)</p> <p>선정 평가 내 실화를 위해 기준 점수 상향 조정</p>
<p>제16조(대면평가 및 현장평가) ①(생략)</p> <p>3.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p> <p>② 사업주관부서는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대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심</p>	<p>제16조(대면평가 및 현장평가) ①(현행과 동일)</p> <p>3.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p> <p>② 사업주관부서는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대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심</p>	<p>기준명확화 (위원별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적용)</p> <p>선정 평가 내 실화를 위해 기준</p>

현행	개정안	비고
<p>의회에서 결정된 업체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사업주관부서는 현장평가 대상 기업에 대하여 지역센터 국산화담당을 포함한 전문가 2~3인으로 평가팀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별지 4-3]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 및 제조능력 2. 유사분야 개발 실적 3. 과제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연구기자재, 시설 현황의 일치성과 상태 확인 4. 기타 현장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확인 <p>④ (생략)</p> <p>※ 현장평가를 생략한 경우 서면평가, 대면평가 점수만 적용한다.</p> <p><추가></p> <p>⑤~⑥ (생략)</p>	<p>의회에서 결정된 업체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u>사업주관부서는 현장평가 대상 기업에 대하여 지역센터 국산화담당자를 포함한 내부전문가 2~3인과 필요시 체계/부체계업체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 평가팀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현장평가 시 세부내용은 [별지 4-3]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 및 제조능력 2. 유사<u>품목 개발 및 양산</u> 실적 3. 과제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연구기자재, 시설 현황의 일치성과 상태 확인 4. 기타 현장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확인 <p>④ (현행과 동일)</p> <p>※ 현장평가를 생략한 경우 서면평가, 대면평가 점수만 적용한다.</p> <p><u>※ 종합평점 산정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자로 하고, 현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함</u></p> <p>④~⑥ (현행과 동일)</p>	<p>점수 상향조정</p> <p>외부전문가 참여가능 토록 조정 (체계업체 참여확대 요구반영) 및 명확화</p> <p>평가요소에 양산실적 추가</p> <p>동점 시 우선 순위 기준 추가</p>
<p>제17조(과제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통보) 과제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통보는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결과를 통보한다.</p>	<p>제17조(과제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통보) ① <u>사업관리주관부서는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주관기업 선정결과와 과제수행계획서 보완 요구사항을 선정기업에 통보한다.</u></p> <p>② <u>주관기업은 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과제수행계획서의 보</u></p>	<p>결과 통보 절차 구체화 및 방사청 규정인용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u>완을 완료 후 사업주관부서로 승인을 요청한다.</u></p> <p><u>③ 사업주관부서는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이 완료되면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약을 체결 추진한다.</u></p>	
<p>제18조 (과제관리자 지정 및 관리번호 부여) ① 사업주관부서는 주관기업과 개발지원사업(자금)협약이 완료되면 개발과제를 담당할 지역센터 기술팀에 통보하고 해당 기술팀장은 과제관리자를 지정하여 개발과제를 부품국산화업무규정에 따라 개발관리업무에 착수토록 한다.</p> <p>② 사업주관부서는 개발관리번호("C+연도+일련번호(4자리)" : 예 C100001)를 부여하여 국방부 또는 방사청에 개발관리번호를 제출하고 관리한다. (신설)</p>	<p>제18조 (과제관리자 지정 및 관리번호 부여) ① 사업주관부서는 주관기업과 개발지원사업(자금)협약이 완료되면 개발과제를 담당할 지역센터 기술팀에 통보하고 해당 기술팀장은 과제관리자를 지정하여 개발과제를 부품국산화업무규정에 따라 개발관리업무에 착수토록 한다.</p> <p>② 사업주관부서는 개발관리번호("C+연도+일련번호(4자리)" : 예 C100001)를 <u>부여하여 방사청에</u> 제출하고 관리한다.</p> <p><u>③ 재개발 과제의 개발관리번호는 최초 개발관리번호에 "R"을 추가하여(예 C100001R) 관리한다.</u></p>	<p>오기수정</p> <p>제도전 제도신설 사항반영</p>
<p>제19조(협약의 체결) 사업주관부서는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사청 "무기 체계 핵심부품국산화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주관기업의 장과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협약서[별지 2-1]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체결 후 결과를 사업수행 담당부서(지역센터 기술팀)에 통보한다. 사업수행 담당부서는 통보 받은 협약서를 통해 부품국산화업무규정에 따라 국산화 개발관리 업무에 착수한다. 다만, 개발협약은 통보받은 "핵심부품 국산화개발</p>	<p>제19조(협약의 체결) ①사업주관부서는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사청 "무기 체계 핵심부품국산화 운영규정" <u>제18조에</u> 따라 주관기업의 장과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협약서[별지 2-1]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체결 후 결과를 사업수행 담당부서(지역센터 기술팀)에 통보한다. 사업수행 담당부서는 통보 받은 협약서를 통해 부품국산화업무규정에 따라 국산화 개발관리 업무에 착수한다. 다만, 개발협약은 통보받은 "핵심부품 국</p>	<p>오기수정</p> <p>업체부담 축소 및</p>

현 행	개정안	비고
<p>지원사업 협약서“로 대체한다.</p> <p><신설></p>	<p>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로 대체하고 <u>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u></p> <p><u>② 사업주관부서는 사용군, 방사청(담당 IPT), 체계업체 및 부체계업체(해당 시)에 협약결과 통보 및 개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u></p>	<p>전 순기에 걸친 개발 관리를 위해 사업비에 개발관리비 반영 및 별도 용역 폐지</p>
<p>제20조(협약의 변경) 협약의 변경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국 산화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 변경사항을 방사청(방산진흥국)과 사업수행 담당부서(지역센터 기술팀)에 10일 이내에 통보한다.</p> <p><신 설></p>	<p>제20조(협약의 변경) ①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 운영규정”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u>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주관기업은 협약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약변경 신청서[별지 제3-8]을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로 신청한다.</u></p> <p><u>② 사업주관부서는 협약변경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평가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사업주관부서는 승인여부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과 사업수행 담당부서(지역센터 기술팀)에 10일 이내에 통보한다.</u></p> <p><u>③ 사업주관부서는 개발대상 품목, 개발자금의 규모, 지원내용 등 협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업 및 협력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오기수정</p> <p>변경절차 구체화</p> <p>방사청 훈령내용 반영</p>
<p>제21조(협약의 해약) ① 협약의 해약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를 따르며, 방사청(방산진흥국)과 사업수행 담당부서(지역센터 기술팀)에 해약사항을 통보한다.</p>	<p>제21조(협약의 해약) ① 협약의 해약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를 따른다. <u>주관기업은 협약의 해약이 필요할 경우 협약해약요청서[별지 제3-6]을 작성 사업주관부서로 신청하며, 사업주관부</u></p>	<p>오기수정</p> <p>변경절차 구체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제1항에 이외에 개발 추진 중에 해당과제에 대해서 중복성 여부 확인시 전문기관은 협약을 개발관리기관에 요구 및 해약할 수 있다.</p>	<p><u>서는 이를 평가심의회에 상정하여 해약여부를 결정 후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승인을 요청한다.</u></p> <p>② 제1항에 이외에 개발 추진 중에 해당과제에 <u>대해서 중복성이 제기될 경우 사업관리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에 상정하여 평가결과 중복성이 인정되면 방사청(방산진흥국)의 승인을 받아 해약할 수 있다.</u></p> <p>③ 사업주관부서는 방사청(방산진흥국)에서 <u>협약해약이 승인되면 그 결과를 주관기업 및 체계업체, 부체계업체(해당 시)에 통보한다.</u></p>	<p>중복성 평가절차 구체화</p> <p>협약해약 후속처리 절차추가</p>
<p>제22조(진도관리)</p> <p>① 사업주관부서는 주관기업으로부터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전까지 진도 보고서[별지 3-1]를 제출받아 진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간이 잔여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제22조(개발 및 과제관리) ① <u>주관기업은 월간업무보고서[별지 3-10]를 익월 5일까지 사업수행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담당부서는 분기단위로 주관기업을 방문하여 개발진도를 점검 후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사업주관부서는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전까지 <u>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평가는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진도보고서를 토대로 개발 추진실적과 개발 자금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는 서면검토와 별도로 평가 대상 기업을 방문 실제 개발실태와 사업수행부서의 개발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점검으로 구성한다. 이때 현장점검은 해당과제의 개발관리 담당자를 제외한 내부 전문가로 현장평가팀을 구성하며 수행하며, 필요 시 체계</u></p>	<p>개발관리 강화를 위한 절차 추가</p> <p>방사청훈령 용어 적용</p> <p>중간평가 절차 및 기준 구체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사업주관부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관부서는 당해 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개발자금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별도로 정한 중간평가표[별지 4-4]에 따라 사업수행 담당부서(지역센터 기술팀)과 점검인원을 편성하여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이 1년 이내이고 서면검토 결과 정상수행이 명확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p> <p>④ 사업주관부서는 진도보고서 검토 및 현장평가 후 지원사업 과제의 계속, 중단, 완료 여부를 판단하고 중단 등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심의회를 개최하</p>	<p><u>부체계 업체 등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u></p> <p><u>③ 주관기업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개발 추진실적과 개발 자금 집행내역 등이 포함된 진도보고서[별지 3-1]를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진도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서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u></p> <p><u>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관부서는 당해 과제의 진도보고서를 검토 후 개발진도 및 개발관리 상태 등 현장 확인사항과 평가팀 구성계획 등이 포함된 중간평가 계획[별지 4-4]을 수립하여 기술진흥센터장의 승인 후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팀은 평가대상과제의 개발관리담당자 입회하에 주관기업(필요시 공동개발기업 포함)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이 1년 이내이고 서면검토 결과 정상수행이 명확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u></p> <p><u>⑤ 사업주관부서는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결과를 토대로 과제의 '계속지원' 또는 '중단' 여부를 기술진흥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사업주관부서는 그 결과를 주관기업에</u></p>	<p>중간평가 절차 및 기준 구체화</p> <p>중간평가 결과의 지역센터</p>

현 행	개정안	비고
<p>여 중단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는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이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주관부서는 특별히 지원사업의 수행현황, 개발자금 사용실태 등 기술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 정밀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진도점검 특별평가[별지 4-7]를 실시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u>통보 및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단 등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중단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u></p> <p><u>⑥ 사업주관부서는 중간평가결과 '계속지원'일 경우 후속개발지원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 미진한 분야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업과 담당 사업수행부서로 통보하며, 주관기업으로부터 적절한 보완방안이 수립 제출될 때까지 후속 개발자금의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u></p> <p><u>⑦ 사업수행 담당부서는 담당과제에 대한 개발관리 중 개발진행, 기업경영상태, 자금관리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해당 과제에 대하여 특별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⑧ 사업주관부서는 특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가로 평가팀을 편성하고 평가 내용에 적합하게 평가항목을 설정하여[별지 4-7 기술진흥센터장의 승인 후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⑨ 특별평가 결과 과제의 중단,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후 그 결과를 주관기업에 통보 및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한다.</u></p> <p><u>⑩ 주관기업은 개발계획, 참여인력, 개발자금등의 과제수행계획서변경이 필요할 경우 과제수행계획서변경 신청서[별지 제3-9]를 작성하여 사업수행 담당부서(지역센터</u></p>	<p>통보절차 추가</p> <p>중간평가 결과 부진한 업체 통제 절차추가</p> <p>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 구체화</p> <p>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 구체화</p> <p>과제수행 계획서 변경 절차 및 기준 구체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u>기술팀)으로 제출하며, 사업수행 담당부서는 변경 요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및 보완 조치후 신청서와 검토의견을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한다. 사업주관부서는 변경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업주관부서의 검토결과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평가심의회를 통하여 승인 할 수 있다.</u></p> <p><u>① 사업주관부서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공인 회계사 중 선정하여 진행중인 과제를 대상으로 매년 회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제24조(최종평가) ① 사업주관부서는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핵심부품사업 과제의 추진실적을 검토·확인토록 한다.</p> <p>② (생략)</p> <p>③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에 최종평가를 상정하여 '성공', '실패' 여부를 판정하고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우수', '보통'으로 '실패'로 판정될 경우 '성실', '불성실'을 구분하며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고 주관기업 및 주 장비 생산업체(양산, 체계개발 단계)에 통보한다.</p>	<p>제24조(최종평가) ① 사업주관부서는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u>개발관리자 담당자 입회하에</u> 핵심부품사업 과제의 추진실적을 검토·확인토록 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u>사업주관부서는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개발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회계정산을 의뢰하여 부당 집행분 등에 대하여 확인하며, 그결과를 평가심의회 안건에 포함한다.</u></p> <p>④ <u>최종평가에서 '성공'은 시험평가결과 기능·성능·신뢰성 등 적용 장비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부품과 이를 양산할 수 있는 공정이 개발 완료된 경우로 한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심의회 심의[별지 4-6]를 통하여 '성공', '실패' 여부를 구분한다.</u></p> <p><u>1. 성공과제 중 평가위원 평점이</u></p>	<p>현장평가 시 개발 관리자 입회 필요</p> <p>최종평가 절차 구체화</p> <p>최종평가 기준 및 절차 구체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④ (생략)</p> <p>⑤ (생략)</p>	<p><u>80점 이상인 경우 '우수'로 하며, 실패과제 중 60점 이하인 경우 '불성실', 그 외의 경우에는 '성실'로 구분한다.</u></p> <p><u>2. 최종평가 평점은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개를 뺀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 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u></p> <p><u>⑤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에 최종평가를 상정하여 '성공', '실패'여부와 과제정산내용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고 주관기업 및 체계업체, 부체계업체에 통보한다.</u></p> <p>⑥ (현행 4항과 동일)</p> <p>⑦ (현행 5항과 동일)</p>	<p>최종평가 기준 및 절차 구체화</p> <p>조항 추가에 따른 조정</p>
<p><신설></p>	<p><u>제22조의 2(개발기간 연장) ① 주관기업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 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에 사유로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개발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 3-11]을 작성하여 사업수행 담당부서로 신청한다.</u></p> <p><u>② 사업수행 담당부서는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개발기간 연장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을 확인한 후 검토의견과 함께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한다.</u></p> <p><u>③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개발기간 연장 신청건의 지연사유, 연장시 성공</u></p>	<p>개발기간 연장절차 구체화</p>

현 행	개정안	비고
	<p><u>가능성, 개발지연으로 인한 생산 물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연장 필요성을 심의하며, 이 때 개발연장을 신청한 주관기업의 과제책임자를 참석시켜 개발지연에 대한 만회계획 등을 청취할 수 있다.</u></p> <p><u>③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 결과 개발기간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 방사청(방산진흥국)에 개발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한다.</u></p> <p><u>④ 사업주관부서는 방사청(방산진흥국)에서 개발기간 연장이 승인 되면 주관기업에 통보 및 개발협약을 변경하며, 그 결과를 연장사유와 함께 체계업체 또는 부체계업체(해당시)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⑤ 주관기업은 개발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협약이 체결되면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 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4조(최종평가) ① 사업주관부서는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핵심부품사업 과제의 추진실적을 검토·확인토록 한다.</p> <p>② (생략)</p> <p>③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에 최종평가를 상정하여 ‘성공’, ‘실패’ 여부를 판정하고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우수’, ‘보통’으로 ‘실패’로 판정될 경우 ‘성실’, ‘불성</p>	<p>제24조(최종평가) ① 사업주관부서는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u>개발관리자 담당자 입회하에</u> 핵심부품사업 과제의 추진실적을 검토·확인토록 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u>사업주관부서는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개발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회계정산을 의뢰하여 부당 집행분 등에 대하여 확인하며, 그결과를 평가심의회 안건</u></p>	<p>최종평가에 개발관리 담당자 참여의무화</p> <p>최종평가 절차 및 기준 구체화</p>

현 행	개정안	비고
<p>실'을 구분하며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고 주관기업 및 주 장비 생산업체(양산, 체계개발 단계)에 통보한다.</p>	<p>에 포함한다.</p> <p>④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심의회에서는 평가대상 과제별로 '성공', '실패' 여부를 판정한 후 '성공'과제는 '우수'여부를, '실패'과제는 '성실', '불성실' 여부를 심의한다.</p> <p>1. 과제의 '성공'은 기준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별지 4-6의 I]</p> <p>가. 개발 대상 부품의 시제품에 대한 시험평가결과 적용 무기체계에서 요구하는 기능, 적용 무기체계와의 인터페이스, 성능, 신뢰성, 국산화율 등 제반조건을 충족</p> <p>나. 개발 대상 부품을 양산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의 완료 단, '나'의 조건은 2016년도 선정 과제부터 적용한다.</p> <p>2. '성공'과제에 대하여 성과와 연구개발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위원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우수'로 판정한다.[별지 4-6의 II]</p> <p>3. '실패'에 대하여 성과와 연구개발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 '성실'로 판정한다.[별지 4-6의 III]</p> <p>4. 최종평가 평점은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개를 뺀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 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p> <p>⑤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에</p>	

현행	개정안	비고
<p>④ (생략) ⑤ (생략)</p>	<p><u>최종평가를 상정하여 '성공', '실패'여부와 과제정산내용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고 주관기업 및 체계업체, 부체계업체(해당 시)에 통보한다.</u></p> <p>⑥ (현행 4항과 동일) ⑦ (현행 5항과 동일)</p>	
<p><신 설></p>	<p>제25조의 2 (재도전) ①<u>최종평가 결과 '성실 실패'로 판정된 경우 주관기업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수행 담당부서(지역센터 기술팀)로 재도전 신청을 할 수 있다.</u></p> <p>② <u>재도전을 희망하는 주관기업은 재도전 신청서[별지 3-12], 과제수행계획서[별지 제1-2호]와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주관기업은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시 다음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재도전 개발기간 : 2년 이내</u> 2. <u>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은 기존에 결정된 금액 중 정산결과 사용되지 않은 잔액 범위 내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3. <u>2-1 개발방안에 다음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최종평가 시 까지 완료된 사항, 성과 및 잔여 개발 필요 사항 분석</u> 나. <u>개발실패 원인 분석 및 대책 명시</u> 4. <u>개발방안은 상기 내용을 기</u> 	<p>방사청 훈령 개정에 따른 재도전 절차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u>준으로 수립하여야 한다.</u></p> <p><u>④ 사업수행 담당부서는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필요 시)을 방문하여 접수된 재도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다.</u></p> <p><u>⑤ 사업수행 담당부서는 재도전 계획의 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면 재도전 신청서와 사업수행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한다.</u></p> <p><u>⑥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수행 담당부서로부터 재도전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를 평가심의회 시 제시하여야 한다.</u></p> <p><u>⑦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재도전 신청사항의 타당성 평가[별지 4-9]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한다.</u></p> <p><u>⑧ 사업주관부서는 방사청(방산진흥국) 검토결과 재도전이 승인된 경우 그 결과를 주관기관, 관련 체계/부체계업체 및 사업수행 담당부서(지역센터 기술팀)에 통보한다.</u></p> <p><u>⑨ 사업주관부서는 재도전 승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업과 개발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수행 담당부서(지역센터 기술팀)에 개발관리를 지시한다.</u></p> <p><u>⑩ 주관기업은 협약체결 후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재</u></p>	

현 행	개정안	비고
	<p><u>도전을 추진하며, 사업주관부서는 제도전 개발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도전 착수 후 12개월이 도래하는 달에 제22조에 따라 중간평가를 수행하여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u></p>	
<p>제28조(출연금의 집행) ① ~② (생략)</p> <p>③ 사업주관부서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무관리 담당부서에 지급 의뢰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계좌(기품원 명의)에 이체하며 이를 통해 주관기업에게 개발비를 지급한다.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관기업 개발자금 사용 등을 확인하며 부당 사용 및 사업수행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발자금 집행을 즉시 중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8조(출연금의 집행) ① ~② (현행과 동일)</p> <p>③ 사업주관부서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무관리 담당부서에 지급 의뢰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계좌(기품원 명의)에 이체하며 이를 통해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에게 개발비를 지급한다.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관기업 개발자금 사용 등을 확인하며 부당 사용 및 사업수행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발자금 집행을 즉시 중지한다.</p> <p><u>④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개발자금으로 1천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를 구매 또는 제작할 경우 취득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⑤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시제품과 1천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에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지원사업 구입품』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해당 연구 기·자재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할 경우</u></p>	<p>개발자금 관리 효율성 강화 및 RCMS 운영상 별도지급이 효율적</p> <p>연구 기·자재, 시제품 관리 절차 구체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u>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고 즉시 그결과를 사업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u> (라벨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730 562 1251 779"> <tr> <td colspan="4">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구입품(연구기자재, 시제품)</td> </tr> <tr> <td>과제명</td> <td></td> <td>개발관리번호</td> <td></td> </tr> <tr> <td>모델명</td> <td></td> <td>취득금액</td> <td></td> </tr> <tr> <td>품명</td> <td></td> <td>취득일자</td> <td></td> </tr> </table>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구입품(연구기자재, 시제품)				과제명		개발관리번호		모델명		취득금액		품명		취득일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구입품(연구기자재, 시제품)																		
과제명		개발관리번호																
모델명		취득금액																
품명		취득일자																
<p>제29조(개발자금의 집행 및 관리) ① ~ ⑨ (생략) ⑩ 사업주관부서는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및 위탁기관 포함)의 개발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9조(개발자금의 집행 및 관리) ① ~ ⑨ (현행과 동일) ⑩ 사업주관부서는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개발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⑪ <u>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은 개발비 산정 및 집행은 별표 3호의 기준을 따르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요령'에 따른다.</u></p>	<p>용어통일</p> <p>개발비 산정 및 집행 기준 명시</p>																
<p>제33조(연구개발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연구개발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는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장을 따른다. <신 설></p>	<p>제33조(연구개발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①연구개발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는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장을 따른다. ②<u>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 다음해 부터 5년간 매년 1월 20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별지 제3-3]을</u></p>	<p>활용실적 제출절차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u>사업관리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u>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및 별지 (목 차)</p> <p>별표 제1호 <삭제 2015. 8.26.> 별표 제2호 <삭제 2015. 8.26.></p> <p>별지 제1호 사업신청 관련 서식 1-1. 과제제안서 1-2.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과제수행 계획서</p> <p>1-3. 위탁연구기관(공동개발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4.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p> <p>별지 제2호 협약 관련 서식 2-1.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p> <p>별지 제3호 보고 및 사업관리 서식 3-1. 진도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및 별지 (목 차)</p> <p>별표 제1호 <삭제 2015. 8.26.> 별표 제2호 <삭제 2015. 8.26.> 별표 제3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개발자금 집행기준</p> <p>별지 제1호 사업신청 관련 서식 1-1. 과제제안서 1-2.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과제수행 계획서 1-2-1. 개발 참여 인력 현황 1-2-2. 개발비 현황 1-2-3. 개발, 생산용 기자재 설비 보유 및 확보방안 1-2-4. 개발과제 참여 실적 1-2-5. 유사 품목 생산 실적 1-2-6. 기업 경영 현황 1-2-7. 가산항목 해당 여부</p> <p>1-3.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4.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u>1-5. 무기체계 핵심부품개발 지원사업 기술협력 의향서</u> <u>1-6.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u></p> <p>별지 제2호 협약 관련 서식 2-1.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p> <p>별지 제3호 보고 및 사업관리 서식 3-1. 진도보고서</p>	<p>본문 개정 에 따른 양식별지 변경사항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3-2. 최종보고서 3-3. 성과활용계획서 3-4. 양도.양수 계약서 3-5. 참여연구원 변경요청서 3-6. 협약 해약요청서 3-7. 기술료 납부계획서 3-8. 개발자금 등 변경승인 요청서 (신설)</p> <p>별지 제4호 평가 관련 서식</p> <p>4-1. 서면평가 서식 4-2. 대면평가 서식 4-3. 현장평가 서식 4-4. 중간평가표 서식 4-5. 최종점검표 4-6. 최종평가서 및 평가표 4-7. 진도점검 특별평가서 및 평가표 4-8. 현장실태 정밀조사서</p>	<p>3-2. 최종보고서 <u>3-3. 성과활용실적 보고서</u> 3-4. 양도.양수 계약서 <u>3-5. 협약 변경 요청서</u> 3-6. 협약 해약요청서 3-7. 기술료 납부계획서 3-8. <삭제> <u>3-9. 과제수행계획서 변경승인 요청서</u> <u>3-10. 월간 업무보고서</u> <u>3-11.개발기간 연장 신청서</u> <u>3-12.재도전 신청서</u></p> <p>별지 제4호 평가 관련 서식</p> <p>4-1. 서면평가 서식 4-2. 대면평가 서식 4-3. 현장평가 서식 4-4. 중간평가표 서식 4-5. 최종점검표 4-6. 최종평가서 및 평가표 4-7. 진도점검 특별평가서 및 평가표 4-8. <삭제> <u>4-9. 재도전 평가표</u></p>	
	<p><u>별표 제3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 사업 개발자금 집행기준</u></p>	<p>별표로 관리할 사항임 (현재는 협약서의 별지)</p>
<p>[별지 제1-1호]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과제 제안서 (RFP)</p>	<p>[별지 제1-1호]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과제 제안서 (RFP)<전 면 개정></p>	<p>개발대상 품목과 기준 명확화</p>
<p>[별지 제1-2호]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과제수행 계획서</p>	<p>[별지 제1-2호]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과제수행 계획서 <전 면 개정> <u>[별지1-2-1호] 개발 참여 인력 현황</u> <u>[별지1-2-2호] 개발비 현황</u> <u>[별지1-2-3호] 개발, 생산용 기자재 설비 보유 및 확보방안</u> <u>[별지1-2-4호] 개발과제 참여 실적</u></p>	<p>과제수행 계획서내용 충실화 및 개발계획서</p>

현행	개정안	비고
	<u>[별지1-2-5호] 유사 품목 생산 실적</u> <u>[별지1-2-6호] 기업 경영 현황</u> <u>[별지1-2-7호] 가산항목 해당 여부</u>	로 활용가 능토록개선
<p>[별지 제1-3호]</p> <p>※ 위탁연구기관이나 공동개발기업이 있을 경우만 작성</p> <p>위탁연구기관(공동개발기관)참여 의사 확인서</p> <p>위의 국산화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수행계획서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위탁연구기관(공동개발기업)으로서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기관(기업)명</p>	<p>[별지 제1-3호]</p> <p>※ <u>공동개발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u>이 있을 경우만 작성</p> <p><u>공동개발기관(위탁연구기관)참여 의사확인서</u></p> <p>위의 <u>국산화개발과제 참여 및 주관기업에서</u> 제출한 <u>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에 동의하고</u>,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u>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u>으로서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u>기업(기관)명</u></p>	공 동 개 발 기업의 우 선순위 및 적용 빈도 가 높음
<p>[별지 제1-4호]</p> <p>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p> <p>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신청함에 있어~</p>	<p>[별지 제1-4호]</p> <p>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p> <p>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u>지원사업</u>을 신청함에 있어~</p>	오기수정
<p>(신설)</p>	<p><u>[별지1-5호]</u></p> <p><u>무기체계 핵심부품개발 지원사업 기술협력 의향서</u></p>	신 청 단 계 부터 협력 기관과 협 조 체계 구축 필요
<p>(신설)</p>	<p><u>[별지1-6호]</u></p> <p><u>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u></p>	개 인 정 보 보호 법 에 의 거 동 의 서 확보 필 요)
<p>[별지 제2-1호]</p> <p>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협약서</p> <p><input type="checkbox"/> 과제명 : __</p>	<p>[별지 제2-1호]</p> <p>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협약서</p> <p><input type="checkbox"/> 과제명 : __ <input type="checkbox"/> 개발관리번호 :</p>	협 약 단 계 부터 개발 관리 번호 부여 관리

현행	개정안	비고												
<p data-bbox="188 327 480 365">'갑', '을', '병' (공통)</p> <p data-bbox="177 427 549 465">제1조 (국산화개발 목표)</p> <p data-bbox="209 501 703 667"><별첨1>의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이하 “과제수행계획서”)상의 개발 목표와 동일하다.</p> <p data-bbox="177 1059 363 1097">제2조 (생략)</p> <p data-bbox="177 1106 627 1144">제3조 (개발자금의 지급/운영)</p> <p data-bbox="209 1178 437 1263">(1) ~ (4) (생략) (신설)</p> <p data-bbox="177 1581 617 1619">제4조 (국산화개발 결과보고)</p> <p data-bbox="209 1646 703 2063">(1) (생략) (2) (갑)은 진도보고서 검토 및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생략) (4) (을), (병)은 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7</p>	<p data-bbox="730 327 1246 365"><u>‘전문기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u></p> <p data-bbox="730 439 1102 477">제1조 (국산화개발 대상)</p> <p data-bbox="762 490 1257 620"><u>주관기업은 공동개발기업(해당시) 등과 협력하여 다음의 사항을 개발한다.</u></p> <p data-bbox="762 633 1023 669"><u>(1) 개발대상 품목</u></p> <table border="1" data-bbox="735 685 1267 790"> <thead> <tr> <th>순번</th> <th>품명</th> <th>부품번호</th> <th>재고번호</th> <th>적용무기체계</th> <th>특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 data-bbox="762 804 1257 920"><u>* 특기사항에는 부품개발과 관련하여 특별한 부가 조건을 명시 (예, 기계식을 전자식으로 개발 등)</u></p> <p data-bbox="762 929 1257 1010"><u>(2) 상기 개발대상 품목을 양산할 수 있는 생산 공정</u></p> <p data-bbox="730 1066 917 1104">제2조 (생략)</p> <p data-bbox="730 1113 1179 1151">제3조 (개발자금의 지급/운영)</p> <p data-bbox="762 1184 991 1223">(1) ~ (4) (생략)</p> <p data-bbox="762 1236 1257 1581"><u>(5)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은 개발비 집행 시 “업무요령” 별표 3호의 기준을 따르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요령”에 따른다.</u></p> <p data-bbox="730 1592 1171 1630">제4조 (국산화개발 결과보고)</p> <p data-bbox="762 1657 1257 2074">(1) (생략) (2) <u>전문기관</u>은 진도보고서 검토 및 <u>중간평가</u> 결과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생략) (4) <u>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7부, 『개발자</u></p>	순번	품명	부품번호	재고번호	적용무기체계	특기사항							<p data-bbox="1286 248 1350 286">필요</p> <p data-bbox="1286 315 1437 454">‘갑’, ‘을’ 등의 표현 대체</p> <p data-bbox="1286 521 1437 759">국산화개발 대상 명확화를 위해 개발대상 품목 명시</p> <p data-bbox="1286 826 1437 1014">부품과 양산 공정 동시 개발토록 명시</p> <p data-bbox="1286 1236 1406 1375">개발자금 집행기준 명시</p> <p data-bbox="1286 1646 1437 1834">‘갑’ 표현 대체 및 규정상의 용어 사용</p> <p data-bbox="1286 1901 1437 2040">방사청 규정과 상이 (협약종료</p>
순번	품명	부품번호	재고번호	적용무기체계	특기사항									

현 행	개정안	비고
<p>부, 『개발자금사용실적보고서』 1부, 『성과활용보고서』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5조 ~제7조 (생략) 제8조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p> <p>(1) (생략)</p> <p>(2) 지원사업의 ~개인의 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p> <p>(3) 국산화개발사업의 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등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을)과 (병)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료 미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소유로 한다.</p> <p>(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 및 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을 무</p>	<p><u>금사용실적보고서』1부, 국산화 인증을 위한 증빙자료 1부, 국방규격 제.개정(안)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u>(5)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5조 ~제7조 (생략) 제8조 (<u>지원사업</u> 성과물의 귀속)</p> <p>(1) (현행과 동일)</p> <p>(2) 지원사업의 ~ 개인의 명의로 출원할 수 없으며, <u>특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시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핵심부품개발지원사업’으로 발생하였음과 개발관리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u></p> <p>(3) 국산화개발사업의 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등의 소유권은 <u>주관기업</u>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u>다만, 기술료를 완납할 때까지 정부소유로하되 (을)이 사용할 수 있다.</u></p> <p>(4) <u>국가 및 ‘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 및 제3자에게 실시토록 할 수 있다.</u></p>	<p>시 제출)</p> <p>방사청 규정 개량항반영 (최종보고서와 국산화 인증 자료 국방규격안동제출 및 5년간 실적보고서 제출</p> <p>용어통일</p> <p>방사청 규정의 내용 미반영 사항 보완</p> <p>방사청 규정의 내용과 상이한 반영 사항 보완</p> <p>내용 명확화 및 안정적 조달을 위해 실제 결과를 사용하는 업체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5) (생략) (신설)</p> <p>제9조 (생략) 제10조 (기술료의 징수)</p> <p>(1) (을), (병)은 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화개발이 성공으로 판정·통보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지불수단(현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2) (을), (병)은 상기 (1)항의 기술료를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3) (을), (병)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료 또는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갑)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5) (현행과 동일)</p> <p>(6) <u>주관기업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u></p> <p>제9조 (생략) 제10조 (기술료의 징수)</p> <p>(1) <u>주관기업은 운영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화개발이 성공으로 평가되고 최초 매출이 발생하면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기관에게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u></p> <p>(2) <u>주관기업은 개발대상 부품의 최초 공급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3) <u>주관기업은 기술료를 조기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조기납부 시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분할 납부시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다른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u></p> <p>(4) <u>주관기업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료 또는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u></p>	<p>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p> <p>방사청 규정의 내용 미반영 사항 추가</p> <p>방사청 규정 개정 사항 (기업규모 별 기술료율 조정) 반영, 상이한 사항 (조기납부 시 감면, 보험증권 발행불가 시 대체 수단 누락 등) 보완 및 업무절차 명확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1조 ~제13조 (생략) 제14조 (기술시험, 규격화 등 개발관리)</p> <p>(1) “을”은 국산화개발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한다.</p> <p>(2) 부대 운용시험이 필요하여 소요군 및 “갑”의 지원 하에 부대 운용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발 시제품 불량으로 초래되는 모든 손상은 “을”이 책임을 지고 변상한다.</p>	<p><u>우 전문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제11조 ~제13조 (생략) 제14조 (개발관리 등)</p> <p>(1) <u>“주관기업”은 과제수행계획서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산화개발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 한다.</u></p> <p>(2) <u>소요군 보유 장비를 이용한 시험이 필요하여 소요군 및 “전문기관”의 지원 하에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발 시제품 불량으로 초래되는 군 보유장비의 모든 손상은 “주관기업”이 책임을 지고 변상한다.</u></p> <p>(3) <u>“주관기업”은 국산화개발을 체계공학 절차에 입각하여 개발 및 개발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개발관리 과정에서 요구하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한다.</u></p> <p>(4) <u>“주관기업”은 “전문기관”의 관리 하에 요구조건 및 기능 검토(System Requirement & Function Review), 설계검토(Design Review), 시험평가 준비상태 검토(Test Readiness Review), 형상 확인(PCA/FCA), 국방 규격(안) 작성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u></p> <p>(5) <u>“주관기업”은 시험평가 착수 전에 “전문기관”에게 시험평가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험평가 계획서는 개발부품의 단위 시험과 체계적합성 시험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제출할 수</u></p>	<p>내용 구체화</p> <p>내용 구체화</p> <p>체계공학 기반의 개발 의무화</p> <p>체계공학 기반의 개발 의무화를 위한 요구사항 추가</p> <p>체계공학 기반의 개발 의무화를 위해 시험평가 계획 제출 의무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5조 ~제19조 (생략) <별첨> 1.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계획서 (신청시의 첨부서류는 제외) 2.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개</p>	<p>있다. (6) “주관기업”은 월간 단위로 개발 진행 현황을 익 월 5일까지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개발자금으로 1천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를 구매 또는 제작할 경우 취득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시제품 및 1천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에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구입품』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해당 연구 기·자재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할 경우 30일 이내에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고 그결과를 “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벨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730 1512 1251 1729"> <tr> <td colspan="4">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구입품(연구기자재, 시제품)</td> </tr> <tr> <td>과제명</td> <td></td> <td>개발관리번호</td> <td></td> </tr> <tr> <td>모델명</td> <td></td> <td>취득금액</td> <td></td> </tr> <tr> <td>품명</td> <td></td> <td>취득일자</td> <td></td> </tr> </table> <p>제15조 ~제19조 (생략) <별첨> 1.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 (신청시의 첨부서류는 제외) 2. <삭제></p>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구입품(연구기자재, 시제품)				과제명		개발관리번호		모델명		취득금액		품명		취득일자		<p>진도관리를 위해 월간 보고서 추가 연구기자재 관리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규정 등에 의거 시제품 및 연구기자재의 관리를 위해 라벨 부착 및 NIIS등록 의무화 용어요류 수정 별표3으로 이동 용어요류</p>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구입품(연구기자재, 시제품)																		
과제명		개발관리번호																
모델명		취득금액																
품명		취득일자																

현행	개정안	비고												
<p>발자금 집행기준 3. ~ 11. (생략) 12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업간 연 구개발계약서(해당시 제출) (추가)</p>	<p>3. ~ 11. (현행과 동일) 12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간 연 구개발계약서(해당시 제출) 13 주관기업과 협력기관간 협력 협 약서(협약시 제출)</p>	<p>수정 협약단계부 터 협력기관 과 공식적 협력체계 구축필요</p>												
<p>[별첨 2]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개발 자금 집행기준 1. 관련 근거 및 참고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28호, 전부개정 2010. 8. 11] ○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운 영규정 제5장(개발자금 조성 및 사용 등) ○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업 무요령 제6장(지원개발자금의 조 성·관리 및 정산 등) < 신 설 ></p>	<p>[별표 3]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개발 자금 집행기준 1. 관련 근거 및 참고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28호, 전부개정 2010. 8. 11] ○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운 영규정 제5장(개발자금 조성 및 사용 등) ○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업 무요령 제6장(지원개발자금의 조 성·관리 및 정산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요령</p>	<p>수시개정 사항으로 일자명시 불필요 RCMS 적용을 위해 산업부기준 준용필요</p>												
<p>[별첨 4]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p> <table border="1" data-bbox="177 1422 699 1541"> <tr> <td>사 업 명</td> <td></td> </tr> <tr> <td>과 제 명</td> <td></td> </tr> <tr> <td>기 관(업)명</td> <td>(□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td> </tr> </table> <p>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 부출연금 지급전 및 전문기관의 장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 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명</p>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명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p>[별첨 4]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p> <table border="1" data-bbox="730 1422 1252 1541"> <tr> <td>사 업 명</td> <td>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td> </tr> <tr> <td>과 제 명</td> <td></td> </tr> <tr> <td>기 업 명</td> <td>(□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td> </tr> </table> <p>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기업, 대표자 및 과 제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 출연금 지급전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 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p>	사 업 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과 제 명		기 업 명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p>사업명 명시 용어오기 수정 (과제참여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 기 업이 작성하 는 사항)</p>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명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사 업 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과 제 명														
기 업 명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p>[별첨 5]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p>	<p>[별첨 5]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p>	<p>상 동</p>												

현행	개정안	비고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r><td>사업명</td><td></td></tr> <tr><td>과제명</td><td></td></tr> <tr><td>기관(업)명</td><td>(□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td></tr> </table> <p>기업정보의 ~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center">기관(업)명</p>	사업명		과제명		기관(업)명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r><td>사업명</td><td>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td></tr> <tr><td>과제명</td><td></td></tr> <tr><td>기업명</td><td>(□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td></tr> </table> <p>기업정보의 ~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center">기업명</p>	사업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과제명		기업명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사업명																																																																		
과제명																																																																		
기관(업)명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사업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과제명																																																																		
기업명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p>[별첨 6]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시스템 적용 동의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r><td>과제명</td><td></td></tr> <tr><td>주관기업</td><td></td><td>과제책임자</td><td></td></tr> <tr><td>공동개발기업 (책임자)</td><td></td><td></td><td></td></tr> </table> <p>본 과제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에서 개발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p>	과제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책임자)				<p>[별첨 6]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시스템 적용 동의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r><td>과제명</td><td></td></tr> <tr><td>주관기업</td><td></td><td>과제책임자</td><td></td></tr> <tr><td>공동개발기업</td><td></td><td>책임자</td><td></td></tr> </table> <p><u>본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u></p>	과제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책임자		<p>양식개선</p> <p>문구 명확화 및 부처명 삭제 (정부조직 개편시 마다 개정예방)</p>																																												
과제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책임자)																																																																		
과제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책임자																																																																
<p>[별첨 7] 외부참여 연구원 기관장확인서</p>	<p>[별첨 7] 외부참여 연구원 기관장확인서</p>																																																																	
<p>[별첨 8] 신규참여 연구원 채용확인서</p> <p><input type="checkbox"/> 과제현황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r><td>사업명</td><td></td></tr> <tr><td>과제명</td><td></td></tr> <tr><td>주관/참여기관</td><td></td><td>총괄책임자</td><td></td></tr> <tr><td>사업기간</td><td></td><td>당해 협약기간</td><td></td></tr> <tr><td>총 사업비</td><td></td><td>당해 사업비</td><td></td></tr> </table> <p><input type="checkbox"/>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r><td>성명</td><td></td><td>(인)</td></tr> <tr><td>생년월일</td><td></td><td></td></tr> <tr><td>소속 및 직위</td><td></td><td></td></tr> <tr><td>담당업무/전공</td><td></td><td></td></tr> <tr><td>주소 / 연락처</td><td>/</td><td></td></tr> <tr><td>참여기간</td><td>20... ~ 20...</td><td>참여율</td></tr> </table> <p>상기인은 ~ 확인합니다. 200</p> <p>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총괄책임자 : (인)</p>	사업명		과제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성명		(인)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20...	참여율	<p>[별첨 8] 신규참여 연구원 채용확인서</p> <p><input type="checkbox"/> 과제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r><td>과제명</td><td></td></tr> <tr><td>개발관리번호</td><td></td></tr> <tr><td>주관기업</td><td></td><td>과제 책임자</td><td></td></tr> <tr><td>공동개발기업</td><td></td><td>과제 책임자</td><td></td></tr> </table> <p><input type="checkbox"/>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r><td>성명</td><td></td><td>(인)</td></tr> <tr><td>생년월일</td><td></td><td></td></tr> <tr><td>부서 및 직위</td><td></td><td></td></tr> <tr><td>담당업무/전공</td><td></td><td></td></tr> <tr><td>주소 / 연락처</td><td>/</td><td></td></tr> <tr><td>참여기간</td><td>20... ~ 20...</td><td>참여율</td></tr> </table> <p>상기인은 ~ 확인합니다. 200</p> <p>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과제책임자 : (인)</p>	과제명		개발관리번호		주관기업		과제 책임자		공동개발기업		과제 책임자		성명		(인)	생년월일			부서 및 직위			담당업무/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20...	참여율	<p>용어 오기 수정, 불필요 정보삭제 및 누락정보 추가 (채용관련 기업정보 추가)</p>
사업명																																																																		
과제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성명		(인)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20...	참여율																																																																
과제명																																																																		
개발관리번호																																																																		
주관기업		과제 책임자																																																																
공동개발기업		과제 책임자																																																																
성명		(인)																																																																
생년월일																																																																		
부서 및 직위																																																																		
담당업무/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20...	참여율																																																																
<p>[별첨 9]</p>	<p>[별첨 9]</p>																																																																	

현행	개정안	비고																																																																																			
<p>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총괄표)</p> <p><input type="checkbox"/> 과제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177 398 703 600"> <tr><td>사업명</td><td></td></tr> <tr><td>과제명</td><td></td></tr> <tr><td>주관기업</td><td>총괄책임자</td></tr> <tr><td>공동개발기업 1</td><td>공동개발기업 2</td></tr> <tr><td>공동개발기업 3</td><td>공동개발기업 4</td></tr> <tr><td>사업기간</td><td>당해 협약기간</td></tr> <tr><td>총사업비</td><td>당해 사업비</td></tr> </table> <p><input type="checkbox"/> 현물부담금 총괄표</p> <table border="1" data-bbox="177 667 703 1025"> <thead> <tr><th colspan="2">구분</th><th>1차년도</th></tr> </thead> <tbody> <tr><td rowspan="2">인건비</td><td>출자금액</td><td></td></tr> <tr><td>주요출자내용</td><td></td></tr> <tr><td rowspan="2">연구기자재 및 시설비</td><td>출자금액</td><td></td></tr> <tr><td>주요출자내용</td><td></td></tr> <tr><td rowspan="2">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td><td>출자금액</td><td></td></tr> <tr><td>주요출자내용</td><td></td></tr> <tr><td rowspan="2">시작품 제작비</td><td>출자금액</td><td></td></tr> <tr><td>주요출자내용</td><td></td></tr> <tr><td rowspan="2">토지건물 건축조성비</td><td>출자금액</td><td></td></tr> <tr><td>주요출자내용</td><td></td></tr> <tr><td colspan="2">합계</td><td></td></tr> </tbody> </table>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공동개발기업 1	공동개발기업 2	공동개발기업 3	공동개발기업 4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사업비	당해 사업비	구분		1차년도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계			<p>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p> <p><input type="checkbox"/> 과제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730 398 1257 577"> <tr><td>과제명</td><td></td></tr> <tr><td>개발관리번호</td><td></td></tr> <tr><td>주관기업</td><td>과제책임자</td></tr> <tr><td>공동개발기업 1</td><td>공동개발기업 2</td></tr> <tr><td>공동개발기업 3</td><td>공동개발기업 4</td></tr> <tr><td>개발기간</td><td>총개발비</td></tr> </table> <p><input type="checkbox"/> 현물부담금 총괄표</p> <table border="1" data-bbox="730 689 1257 1003"> <thead> <tr><th colspan="2">구분</th><th>1차년도</th></tr> </thead> <tbody> <tr><td rowspan="2">인건비</td><td>출자금액</td><td></td></tr> <tr><td>주요출자내용</td><td></td></tr> <tr><td rowspan="2">연구기자재 및 시설비</td><td>출자금액</td><td></td></tr> <tr><td>주요출자내용</td><td></td></tr> <tr><td rowspan="2">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td><td>출자금액</td><td></td></tr> <tr><td>주요출자내용</td><td></td></tr> <tr><td rowspan="2">시작품 제작비</td><td>출자금액</td><td></td></tr> <tr><td>주요출자내용</td><td></td></tr> <tr><td colspan="2">합계</td><td></td></tr> </tbody> </table>	과제명		개발관리번호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1	공동개발기업 2	공동개발기업 3	공동개발기업 4	개발기간	총개발비	구분		1차년도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계			<p>불필요 용어 수정</p> <p>불필요 항목삭제 및 용어 오류 수정</p> <p>미적용사항 삭제</p>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공동개발기업 1	공동개발기업 2																																																																																				
공동개발기업 3	공동개발기업 4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사업비	당해 사업비																																																																																				
구분		1차년도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계																																																																																					
과제명																																																																																					
개발관리번호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1	공동개발기업 2																																																																																				
공동개발기업 3	공동개발기업 4																																																																																				
개발기간	총개발비																																																																																				
구분		1차년도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계																																																																																					
<p>[별첨 11] 위탁연구개발 계약서</p> <p><input type="checkbox"/> 사업명 : <input type="checkbox"/> 과제명 :</p> <p>제1조 (국산화개발의 목표) <별첨1>의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이하 “과제수행계획서”) 상의 국산화개발목표와 동일하다.</p> <p>공통사항 ‘값’, ‘을’ (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위임장</p> <p>우리 ~확약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명 : <input type="checkbox"/> 과제명 :</p>	<p>[별첨 11] 위탁연구개발 계약서</p> <p><input type="checkbox"/> 과제명 : <input type="checkbox"/> 개발관리번호 :</p> <p>제1조 (위탁연구개발 목표) <별첨1>의 위탁 연구개발 과업지시서의 업무</p> <p><u>‘주관기업’, ‘위탁연구기관’</u> (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위임장</p> <p>우리 ~확약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과제명 : <input type="checkbox"/> 개발관리번호 :</p>	<p>과제관리에 필요한 정 보로 대체</p> <p>위탁범위 명확화 (위탁업무만 명시한 과업 지시서 활용) 용어 대체</p> <p>과제관리에 필요한 정 보로 대체</p>																																																																																			
<p>[별첨 12]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간의 연 구개발 계약서</p> <p><input type="checkbox"/> 사업명 : <input type="checkbox"/> 과제명 :</p>	<p>[별첨 12]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간의 연 구개발 계약서</p> <p><input type="checkbox"/> 과제명 : <input type="checkbox"/> 개발관리번호 :</p>	<p>과제관리에 필요한 정 보로 대체</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조 (국산화개발의 목표) <별첨1>의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이하 “과제수행계획서”)상의 개발 목표와 동일하다.</p> <p>제2조 (국산화개발의 수행) (을)은 (갑)과 협력하여 본 국산화개발사업을 <별첨>의 과제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제7조(생략)</p> <p>제8조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당해 국산화개발사업 중 발생된 지적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며, (갑)이 운영요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완납한 시점에서는 (갑)과 (을)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 그 소유를 정한다.</p> <p>제9조~제10조(생략)</p> <p>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본 국산화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국산화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국산화개발지원사업 업무요령을 준수한다.</p> <p>(이하 생략) 공통사항 ‘갑’, ‘을’</p>	<p>제1조 (국산화개발의 목표) <u>공동개발기업은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동으로 개발한다.</u></p> <p><u>(1) 개발대상 품목</u></p> <table border="1" data-bbox="762 414 1225 548"> <thead> <tr> <th>순번</th> <th>부품명</th> <th>부품번호 (재고번호)</th> <th>적용 무기체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u>(2) 상기 개발대상 품목을 양산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의 개발</u></p> <p>제2조 (국산화개발의 수행) <u>(1) 공동개발기업은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본 국산화개발사업을 <별첨>의 과제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u>(2)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u></p> <table border="1" data-bbox="774 929 1241 996"> <thead> <tr> <th>주관기업</th> <th>공동개발기업</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r> </tbody> </table> <p>제3조~제7조(생략)</p> <p>제8조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당해 국산화개발사업 중 발생된 지적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등 <u>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u>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며, <u>주관기업</u>이 운영요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완납한 시점에서는 <u>주관기업의 소유로 한다.</u></p> <p>제9조~제10조(생략)</p> <p>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u>공동개발기업은 본 국산화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업무요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이하 생략) <u>‘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u></p>	순번	부품명	부품번호 (재고번호)	적용 무기체계	비고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p>개발 목표 명확화</p> <p>업무분장 명확화</p> <p>방사청 규정과 상이한 사항 보완</p> <p>규정 오적용 사항 보완</p> <p>용어대체</p>
순번	부품명	부품번호 (재고번호)	적용 무기체계	비고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p><신설></p>	<p>[별첨 12] <u>무기체계 핵심부품개발 지원사업 기술협력 협약서</u></p>	<p>협약단계부터 협력기관과 공식적 협력체계 구축필요</p>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3-1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진도 보고서</p> <table border="1" data-bbox="177 405 687 465"> <tr> <td>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td> <td></td> </tr> </table> <p><별첨 1> 부품국산화개발 추진현황 기타성과 <신 설> 개발과정상 문제점 <별첨 2> 개발자금 사용내역서 <신 설></p>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p>[별지 제3-1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진도 보고서</p> <table border="1" data-bbox="730 405 1241 465"> <tr> <td>공동개발기업</td> <td></td> </tr> </table> <p><별첨 1> 부품국산화개발 추진현황 기타성과 ※세부목록<별첨3> 및 증빙자료 별도 첨부 연구기자재 확보현황 개발과정상 문제점 <별첨 2> 개발자금 사용내역서 <별첨 3> 주요개발성과 <별첨 4> 연구기자재 확보 및 관리 현황</p>	공동개발기업		<p>오기수정 (미사용 용어) 연구기자재 및 지재권 등 성과 관리의무 강화</p>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p>[별지 제3-2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최종 보고서</p> <p>[편집순서 3 - 요약서 초록]</p> <table border="1" data-bbox="177 1104 703 1350"> <tr> <td>기타성과</td> <td>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td> </tr> </table> <p>[편집순서 4 - 목차 및 본문]</p> <p>제 1 장 개발기술의 개요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p> <p>제 2 장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p> <p>제 1 절 국산화개발 목표 ※ 최종 목표 및 연차별 목표를 간략히 기술 ※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p> <p>제 2 절 세부 계획 및 개발내용 ※ 구체적인 개발방법, 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실험데이터, 도면, 인증서, 실물사진(구입기자 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포함</p>	기타성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p>[별지 제3-2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최종 보고서</p> <p>[편집순서 3 - 요약서 초록]</p> <table border="1" data-bbox="730 1104 1257 1350"> <tr> <td>기타성과</td> <td>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 논문발표 : 건수 신규인력고용 : 명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td> </tr> </table> <p>[편집순서 4 - 목차 및 본문]</p> <p>제 1 장 개발기술의 개요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p> <p>제 2 장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p> <p>제 1 절 국산화개발 목표 ※ 최종 목표 및 연차별 목표를 간략히 기술 ※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p> <p>제 2 절 세부 계획 및 개발내용 ※ 구체적인 개발방법, 원리, 구성, 개발대상품 목의 내부 인터페이스 체계, 시제품 제조방 법, 시험평가 방법 및 결과 등 기술 ※ SE 활동내용 및 각 단계별 산출물, 각 단계 별 Action Item 및 조치결과 등 기술 ※ 개발 중 발생한 문제점과 이의 해결 내용 등 기술</p>	기타성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 논문발표 : 건수 신규인력고용 : 명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p>기타성과 항목에 인력고용 사항추가</p> <p>최종 보고서 내용 내실화</p>
기타성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기타성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 논문발표 : 건수 신규인력고용 : 명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현행	개정안	비고																		
<p>제 3 장 성과요약 및 기대효과</p> <p>※ 개발성과를 요약하고, 개발기술의 적용제품, 기대효과 등 기술</p> <p><신 설></p> <p>[편집순서 5 - 표지 및 뒷면 주의문]</p>	<p>※ 실험데이터, 도면, 인증서, 실물사진(구입기자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포함</p> <p><u>제 3 절 양산을 위한 생산공정 개발내용</u></p> <p>※ 생산 공정도, 제조작업문서, 생산 소요 장비, 치공구 도면 등 포함</p> <p><u>[편집순서 5 - 주요 성과물 목록]</u></p> <p><u>[편집순서 6 - 연구기자재 확보 및 관리현황]</u></p> <p>[편집순서 7 - 표지 및 뒷면 주의문]</p>	<p>양산공정 개발 의무화 필요, 성과 및 연구 기자재관리 강화</p>																		
<p>[별지 제3-3호]</p> <p>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성과활용 계획서</p>	<p>[별지 제3-3호] (전면개정)</p> <p><u>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성과활용실적 보고서</u></p>	<p>방사청훈령 상 실적관리 필요</p>																		
<p>[별지 제3-4호]</p> <p>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양도·양수 계약서</p> <p><input type="checkbox"/> 양도·양수 대상</p> <p>○ 사업명 :</p> <p>○ 과제명 :</p>	<p>[별지 제3-4호]</p> <p>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양도·양수 계약서</p> <p><input type="checkbox"/> 양도·양수 대상</p> <p>○ 과제명 :</p> <p>○ 개발관리번호 :</p>	<p>과제관리상 중요한 항목으로 조정</p>																		
<p>[별지 제3-5호]</p> <p>참여연구원 변경 요청서</p>	<p>[별지 제3-5호] (전면개정)</p> <p><u>무기체계 핵심부품 개발지원사업 협약변경 요청서</u></p>	<p>3-5, 3-8 등 협약 변경 관련 사항 통합</p>																		
<p>[별지 제3-6호]</p> <p>협약해약요청서</p> <table border="1" data-bbox="177 1440 699 1503"> <tr> <td>사업명</td> <td></td> </tr> <tr> <td>과제번호</td> <td></td> </tr> </table>	사업명		과제번호		<p>[별지 제3-6호]</p> <p><u>무기체계 핵심부품 개발지원사업 협약 해약요청서</u></p> <table border="1" data-bbox="732 1440 1254 1503"> <tr> <td>과제명</td> <td></td> </tr> <tr> <td>개발관리번호</td> <td></td> </tr> </table>	과제명		개발관리번호		<p>용어명확화</p> <p>오기수정</p>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개발관리번호																				
<p>[별지 제3-7호]</p> <p>기술료 납부계획서</p> <p>과제번호</p> <table border="1" data-bbox="177 1659 699 1928"> <tr> <td rowspan="5">납부방법® (해당란에 표)</td> <td><input type="checkbox"/>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을 일시 완납 (40% 감면)</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연차별 납부(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3차년도 내 완납(20%감면)</td> </tr> <tr> <td colspan="2"><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177 1951 699 1995"> <tr> <td>작성요령</td> </tr> </table> <p>① 과제번호 : 전산접수시 과제별 자동</p>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	<input type="checkbox"/>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을 일시 완납 (40% 감면)	<input type="checkbox"/> 연차별 납부(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input type="checkbox"/>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	<input type="checkbox"/>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	<input type="checkbox"/> 3차년도 내 완납(20%감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작성요령	<p>[별지 제3-7호]</p> <p>기술료 납부계획서</p> <p>개발관리번호</p> <table border="1" data-bbox="732 1659 1254 1928"> <tr> <td rowspan="5">납부방법® (해당란에 표)</td> <td><input type="checkbox"/>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을 일시 완납 (40% 감면)</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연차별 납부(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3차년도 내 완납(10%감면)</td> </tr> <tr> <td colspan="2"><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732 1951 1254 1995"> <tr> <td>작성요령</td> </tr> </table> <p>① 개발관리번호 : 개발협약 시 부여</p>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	<input type="checkbox"/>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을 일시 완납 (40% 감면)	<input type="checkbox"/> 연차별 납부(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input type="checkbox"/>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	<input type="checkbox"/>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	<input type="checkbox"/> 3차년도 내 완납(10%감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작성요령	<p>오기수정</p> <p>오기수정</p> <p>오기수정</p>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		<input type="checkbox"/>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을 일시 완납 (40% 감면)																		
		<input type="checkbox"/> 연차별 납부(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input type="checkbox"/>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																		
		<input type="checkbox"/>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																		
	<input type="checkbox"/> 3차년도 내 완납(20%감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작성요령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	<input type="checkbox"/>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을 일시 완납 (40% 감면)																			
	<input type="checkbox"/> 연차별 납부(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input type="checkbox"/>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																			
	<input type="checkbox"/>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																			
	<input type="checkbox"/> 3차년도 내 완납(10%감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작성요령																				

현행	개정안	비고
<p>으로 부여받은 번호 또는 협약시 부여된 번호를 기입한다.</p> <p>② 과제명 : 협약시 사용한 부품국산 화개발내용이 함축된 제목을 기입한다.</p> <p>③ 사업명 :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부품국산화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이전부품국산화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부품국산화개발사업 및 창업보육부품국산화개발사업 등을 선택하여 기입한다.</p> <p>④ 기업명 : 기업명을 기입한다.(기술료 납부 의무를 가진 기업을 기입한다.)</p> <p>⑤ 협약금액 : 협약하여 ~ 기입한다.</p> <p>⑥ 잔액 : 협약하여 지급된 ~ 중 정 부출연금 잔액에 ~을 기입한다.</p> <p>⑦ 실사용금액 : 협약금액~기입한다.</p> <p>⑧ 납부대상 기술료 : 실사용금액에서 해당기술료 비율인 20%를 곱한 금액을 기입한다.(천원미만단위는 절사한다.)</p> <p>⑨ 납부방법 : 납부 예정인 ~체크한다.)</p> <p>⑩ 즉시완납 ○ 공급계약이 ~한다.)</p> <p>⑪ 연차별 납부</p> <p>⑫ 기업명과 ~ 날인한다.</p> <p>⑬ 보증보험증권~ 작성한다.</p>	<p>받은 개발관리번호를 기입한다.</p> <p>② 과제명 : 개발협약서의 과제명을 제목을 기입한다.</p> <p><삭제></p> <p>③ 기업명 : 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명을 기입한다.(주관기업을 의미)</p> <p>④ 협약금액 : 협약하여 ~기입한다.</p> <p>⑤ 잔액 : 협약하여 ~중 정산결과 잔액에 ~을 기입한다.</p> <p>⑥ 실사용금액 : 협약금액~기입한다.</p> <p>⑦ 납부대상 기술료 : 정산결과 정부출연금 실사용금액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기술료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곱한 금액을 기입한다.(천원미만단위는 절사한다.)</p> <p>⑧ 납부방법 : 납부 예정인~ 체크한다.)</p> <p>⑨ 즉시완납 ○ 공급계약이 ~한다.)</p> <p>⑩ 연차별 납부</p> <p>⑪ 기업명과 ~ 날인한다.</p> <p>⑫ 보증보험증권을 ~ 작성한다.</p>	<p>오기수정</p> <p>오류수정 (관련없는 사업나열)</p> <p>의미 명확화</p> <p>의미 명확화</p> <p>오류수정 (규정과 상이)</p> <p>조항번호 수정 (3항삭제)</p>
[별지 제3-8호]	<삭제>	3-5로 통합
개발자금 등 변경승인 요청서		
<신설>	[별지 제3-9호] 과제수행계획서 변경승인 요청서	누락양식 추가
<신설>	[별지 제3-10호] 월간 업무보고서	개발관리 강화
<신설>	[별지 제3-11호] 개발기간 연장 신청서	누락양식 추가
<신설>	[별지 제3-12호] 핵심부품개발지원사업 재도전 신청서	방사청 규정 개장항반영 (제도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4-1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서면평가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번</th> <th>평가항목</th> <th>중점 검토사항</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업계획의 충실성</td> <td>○ 사업계획이~ 작성되었는가? ○ 구체적 근거에 ~ 작성되었는가?</td> <td>30</td> </tr> <tr> <td>2</td> <td>개발자금 산정의 적정성</td> <td>○ 총개발자금 ~ 적정한가? ○ 비목별 ~ 책정되었는가? ○ 국산화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자금을 책정하였는가?</td> <td>30</td> </tr> <tr> <td>3</td> <td>국산화개발 능력 및 여건</td> <td>○ 국산화개발에 ~ 있는가? ○ 수행기관, ~ 적정한가?</td> <td>30</td> </tr> <tr> <td>4</td> <td>목표달성의 가능성</td> <td>○ 제시된 ~구체적인가? ○ 개발방법 ~ 설계되었는가? ○ 국산화개발 성공 및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가?</td> <td>10</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100</td> </tr> </tbody> </table>	번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점	1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계획이~ 작성되었는가? ○ 구체적 근거에 ~ 작성되었는가?	30	2	개발자금 산정의 적정성	○ 총개발자금 ~ 적정한가? ○ 비목별 ~ 책정되었는가? ○ 국산화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자금을 책정하였는가?	30	3	국산화개발 능력 및 여건	○ 국산화개발에 ~ 있는가? ○ 수행기관, ~ 적정한가?	30	4	목표달성의 가능성	○ 제시된 ~구체적인가? ○ 개발방법 ~ 설계되었는가? ○ 국산화개발 성공 및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가?	10	합 계			100	<p>[별지 제4-1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서면평가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번</th> <th>평가항목</th> <th>중점 검토사항</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업계획의 충실성</td> <td>○ 사업계획이~ 작성되었는가? ○ 구체적 근거에 ~ 작성되었는가? <u>○ 해외 도입가 대비 양산가격이 경쟁력이 있는가?</u></td> <td>20</td> </tr> <tr> <td>2</td> <td>개발자금 산정의 적정성</td> <td>○ 총개발자금 ~ 적정한가? ○ 비목별 ~ 책정되었는가? <u>○ 체계시험비용을 포함한</u> 국산화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자금을 책정하였는가?</td> <td>10</td> </tr> <tr> <td>3</td> <td><u>국산화개발 여건</u></td> <td>○ 국산화개발에 ~ 있는가? ○ 수행기관, ~ 적정한가?</td> <td>20</td> </tr> <tr> <td>4</td> <td><u>개발실적</u></td> <td><u>○ 개발대상 품목과 유사품목의 개발 및 양산실적이 있는가?</u></td> <td>20</td> </tr> <tr> <td>5</td> <td>목표달성의 가능성</td> <td>○ 제시된 ~구체적인가? ○ 개발방법 ~ 설계되었는가? <u>○ 개발관리 방안이 적절한가?</u> <u>○ 협력기관, 공동개발기업 등과</u> <u>의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u>한가? ○ 국산화개발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td> <td>30</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100</td> </tr> </tbody> </table>	번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점	1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계획이~ 작성되었는가? ○ 구체적 근거에 ~ 작성되었는가? <u>○ 해외 도입가 대비 양산가격이 경쟁력이 있는가?</u>	20	2	개발자금 산정의 적정성	○ 총개발자금 ~ 적정한가? ○ 비목별 ~ 책정되었는가? <u>○ 체계시험비용을 포함한</u> 국산화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자금을 책정하였는가?	10	3	<u>국산화개발 여건</u>	○ 국산화개발에 ~ 있는가? ○ 수행기관, ~ 적정한가?	20	4	<u>개발실적</u>	<u>○ 개발대상 품목과 유사품목의 개발 및 양산실적이 있는가?</u>	20	5	목표달성의 가능성	○ 제시된 ~구체적인가? ○ 개발방법 ~ 설계되었는가? <u>○ 개발관리 방안이 적절한가?</u> <u>○ 협력기관, 공동개발기업 등과</u> <u>의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u> 한가? ○ 국산화개발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30	합 계			100	<p>국산화 워크숍 결과반영 (업체선정 평가시 기존실적 배점강화 필요 및 실질적으로 항목보완)</p>
번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점																																																			
1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계획이~ 작성되었는가? ○ 구체적 근거에 ~ 작성되었는가?	30																																																			
2	개발자금 산정의 적정성	○ 총개발자금 ~ 적정한가? ○ 비목별 ~ 책정되었는가? ○ 국산화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자금을 책정하였는가?	30																																																			
3	국산화개발 능력 및 여건	○ 국산화개발에 ~ 있는가? ○ 수행기관, ~ 적정한가?	30																																																			
4	목표달성의 가능성	○ 제시된 ~구체적인가? ○ 개발방법 ~ 설계되었는가? ○ 국산화개발 성공 및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가?	10																																																			
합 계			100																																																			
번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점																																																			
1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계획이~ 작성되었는가? ○ 구체적 근거에 ~ 작성되었는가? <u>○ 해외 도입가 대비 양산가격이 경쟁력이 있는가?</u>	20																																																			
2	개발자금 산정의 적정성	○ 총개발자금 ~ 적정한가? ○ 비목별 ~ 책정되었는가? <u>○ 체계시험비용을 포함한</u> 국산화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자금을 책정하였는가?	10																																																			
3	<u>국산화개발 여건</u>	○ 국산화개발에 ~ 있는가? ○ 수행기관, ~ 적정한가?	20																																																			
4	<u>개발실적</u>	<u>○ 개발대상 품목과 유사품목의 개발 및 양산실적이 있는가?</u>	20																																																			
5	목표달성의 가능성	○ 제시된 ~구체적인가? ○ 개발방법 ~ 설계되었는가? <u>○ 개발관리 방안이 적절한가?</u> <u>○ 협력기관, 공동개발기업 등과</u> <u>의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u> 한가? ○ 국산화개발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30																																																			
합 계			100																																																			
<p>[별지 제4-2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대면평가서</p> <table border="1"> <thead> <tr> <th>조정결과</th> <th>평가일자</th> <th>20 . . .</th> </tr> </thead> <tbody> <tr> <td>1. 개발목표 및 내용</td> <td></td> <td></td> </tr> <tr> <td>2. 개발 기간</td> <td></td> <td></td> </tr> <tr> <td>3. 사업비</td> <td></td> <td></td> </tr> <tr> <td>4. 기타 조정사항</td> <td></td> <td></td> </tr> </tbody> </table> <p>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대면평가표</p> <table border="1"> <tbody> <tr> <td>2개발능력 (20)</td> <td>○ 기술 능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 보유 여부, 부족 분야 능력 확보계획의 적절성(공동, 위탁 포함) ※소요기술, 제조설비 보유현황, 유사부품 개발 및 관련 분야 기술개발 실적 참고 </td> </tr> <tr> <td></td> <td>○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능력, 적정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책임자의 해당분야 국산화개발 및 유사품목 개발실적, 참여 연구원 능력과 역할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공동, 위탁 연구기관 포함) </td> </tr> </tbody> </table>	조정결과	평가일자	20 . . .	1. 개발목표 및 내용			2. 개발 기간			3. 사업비			4. 기타 조정사항			2개발능력 (20)	○ 기술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 보유 여부, 부족 분야 능력 확보계획의 적절성(공동, 위탁 포함) ※소요기술, 제조설비 보유현황, 유사부품 개발 및 관련 분야 기술개발 실적 참고 		○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능력,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책임자의 해당분야 국산화개발 및 유사품목 개발실적, 참여 연구원 능력과 역할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공동, 위탁 연구기관 포함) 	<p>[별지 제4-2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대면평가서</p>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결과</th> <th>평가일자</th> <th>20 . . .</th> </tr> </thead> <tbody> <tr> <td>1. 사업계획 및 개발 자금의 적정성</td> <td></td> <td></td> </tr> <tr> <td>2. 개발 능력</td> <td></td> <td></td> </tr> <tr> <td>3. 개발성공가능성</td> <td></td> <td></td> </tr> <tr> <td>4. 기타 사항</td> <td></td> <td></td> </tr> </tbody> </table> <p>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대면평가표</p> <table border="1"> <tbody> <tr> <td>2개발능력 (20)</td> <td>○ 기술 능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 보유 여부, 부족 분야 능력 확보계획의 적절성(공동, 위탁 포함) ※소요기술, 제조설비 보유현황, 유사부품 개발, <u>직접양산</u>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 실적 참고 </td> </tr> <tr> <td></td> <td>○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능력, 적정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책임자의 해당분야 국산화개발 및 유사품목 개발실적, 참여 연구원 능력과 역할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공동, 위탁 연구기관 포함) </td> </tr> </tbody> </table>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1. 사업계획 및 개발 자금의 적정성			2. 개발 능력			3. 개발성공가능성			4. 기타 사항			2개발능력 (20)	○ 기술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 보유 여부, 부족 분야 능력 확보계획의 적절성(공동, 위탁 포함) ※소요기술, 제조설비 보유현황, 유사부품 개발, <u>직접양산</u>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 실적 참고 		○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능력,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책임자의 해당분야 국산화개발 및 유사품목 개발실적, 참여 연구원 능력과 역할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공동, 위탁 연구기관 포함) 	<p>평가항목을 실질적으로 보완 (성공가능성 평가 및 평가요소에 양산실적 포함)</p>										
조정결과	평가일자	20 . . .																																																				
1. 개발목표 및 내용																																																						
2. 개발 기간																																																						
3. 사업비																																																						
4. 기타 조정사항																																																						
2개발능력 (20)	○ 기술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 보유 여부, 부족 분야 능력 확보계획의 적절성(공동, 위탁 포함) ※소요기술, 제조설비 보유현황, 유사부품 개발 및 관련 분야 기술개발 실적 참고 																																																				
	○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능력,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책임자의 해당분야 국산화개발 및 유사품목 개발실적, 참여 연구원 능력과 역할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공동, 위탁 연구기관 포함)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1. 사업계획 및 개발 자금의 적정성																																																						
2. 개발 능력																																																						
3. 개발성공가능성																																																						
4. 기타 사항																																																						
2개발능력 (20)	○ 기술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 보유 여부, 부족 분야 능력 확보계획의 적절성(공동, 위탁 포함) ※소요기술, 제조설비 보유현황, 유사부품 개발, <u>직접양산</u>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 실적 참고 																																																				
	○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능력,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책임자의 해당분야 국산화개발 및 유사품목 개발실적, 참여 연구원 능력과 역할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공동, 위탁 연구기관 포함) 																																																				
<p>[별지 제4-3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현장평가서</p> <p>● 평가 참여자 성명 (인)</p> <p>● 현장평가 결과 : 총점</p> <p>● 가점확인 : 총점</p> <p>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현장평가표</p> <table border="1"> <tbody> <tr> <td>3.과제 책임자</td> <td>18</td> <td>1.기술적 개발 역량</td> <td>5</td> </tr> </tbody> </table>	3.과제 책임자	18	1.기술적 개발 역량	5	<p>[별지 제4-3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현장평가서</p> <p>● 평가 참여자 성명 (<u>서명</u>)</p> <p>● 현장평가 결과 : 총점</p> <p>● 가점확인 : <u>총점</u></p> <p>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현장평가표</p> <table border="1"> <tbody> <tr> <td>3.과제 책임자</td> <td>15</td> <td>1. 기술적 개발 역량</td> <td>5</td> </tr> </tbody> </table>	3.과제 책임자	15	1. 기술적 개발 역량	5	<p>현실화 (도장→서명)</p> <p>국산화</p>																																												
3.과제 책임자	18	1.기술적 개발 역량	5																																																			
3.과제 책임자	15	1. 기술적 개발 역량	5																																																			

현행		개정안		비고																																																																												
4.개발 참여 인력	2.유사부품 개발 성공 경험여부	4	등 개발참여 인력	2. 유사 부품 개발 참여 실적, 근무경력 및 담당 업무의 유사성	5	워크숍 결과반영 (업체선정 평가시 기존실적, 자체생산 및 품보 능력 배점강화)																																																																										
	3.개발 관리 능력	5		3. 개발 관리 능력 및 사업절차 이해도	5																																																																											
	4.핵심부품국산화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도	4		4.유사품목 개발 및 양산 실적	18		1.개발대품목과 유사 부품의 자체개발 성공 실적	6																																																																								
5.개발 능력, 개발관리 체계	1.담당분야에 대한 기술능력 보유 여부	5	5. 개발 능력, 개발 관리 체계	2.개발대상품목과 유사 부품의 자체 양산 실적	6		1. 체계공학에 의한 개발관리 체계구축여부	6																																																																								
	2.유사 부품 개발 참여 실적, 근무경력 및 담당 업무의 유사성	5		3.유사품목의 개발 및 양산 시 품질수준	6			2. 시물레이션, 설계해석 능력	5																																																																							
	3.사업기간 중 계속 참여 가능성	5		1. 체계공학에 의한 개발관리 체계구축여부	6			3. 부족 분야에 대한 보완 방안의 적절성	4																																																																							
6.시제작 능력	1.체계공학에 의한 개발관리 체계구축여부	6	6. 시제작 능력	2. 자체 생산 능력 보유 및 품질관리체계	3		1. 치공구, 생산 공정 설계 능력	4																																																																								
	2.시물레이션, 설계해석 능력	5		3. 시제작 적용 예정 장비의 상태	3			2. 자체 생산 능력 보유 및 품질관리체계	3																																																																							
	3.부족 분야에 대한 보완 방안의 적절성	4		3. 시제작 적용 예정 장비의 상태	3																																																																											
<신 설>				<p>● 과제수행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의 타당성 확인 결과</p> <p>□ 참여 인력의 실제 근무여부 및 경력 확인</p> <p>□ 연구 기자재 및 시설의 실제보유 여부 및 상태</p> <p>□ 우대사항의 진위 여부</p>			점수반영 여부는 국산화실 주관사항으로 사실 확인 형태로 조정																																																																									
<p>[별지 제4-4호]</p> <p>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중간평가표</p> <p>2. 조사현황</p> <p>● 평가 참여자 성명 (인)</p> <p>3. 국산화 개발추진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계 획</th> <th>실 적</th> <th>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개발목표</td> <td></td> <td></td> <td></td> </tr> <tr> <td>세부개발 내용 및 목표치</td> <td></td> <td></td> <td></td> </tr> <tr> <td>검토의견</td> <td colspan="3"></td> </tr> </tbody> </table> <p>4. 개발자금 사용 및 연구기자재 관리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구기자재 관리현황</th> <th>품 명</th> <th>구적·수량</th> <th>구입 년월일</th> <th>구입가격 (천원)</th> <th>구 입 처 (전화번호)</th> <th>설치 장소</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5. 종합검토결과(해당란에 √)</p> <table border="1"> <thead> <tr> <th>계 속</th> <th>중 단</th> <th>조기완료</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세부개발 내용 및 목표치				검토의견				연구기자재 관리현황	품 명	구적·수량	구입 년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 입 처 (전화번호)	설치 장소								계 속	중 단	조기완료	()	()	()	<p>[별지 제4-4호]</p> <p>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중간평가표</p> <p>2. 평가현황</p> <p>● 평가 참여자 성명 (서명)</p> <p>3. 국산화 개발 추진 및 진도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계 획</th> <th>실 적</th> <th>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개발목표</td> <td></td> <td></td> <td></td> </tr> <tr> <td>세부개발 내용 및 목표치</td> <td></td> <td></td> <td></td> </tr> <tr> <td>개발관리현황</td> <td colspan="3"></td> </tr> <tr> <td>개발진행 관련 특기사항</td> <td colspan="3"></td> </tr> <tr> <td>진도검토 종합결과</td> <td colspan="3"></td> </tr> </tbody> </table> <p>4. 개발자금 사용 및 연구기자재 관리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구기자재 관리현황</th> <th>품 명</th> <th>수량</th> <th>확보 년월일</th> <th>가격 (천원)</th> <th>구입/ 제작</th> <th>설치 장소</th> <th>NTIS 등록여부</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5. 종합검토결과</p>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세부개발 내용 및 목표치				개발관리현황				개발진행 관련 특기사항				진도검토 종합결과				연구기자재 관리현황	품 명	수량	확보 년월일	가격 (천원)	구입/ 제작	설치 장소	NTIS 등록여부									<p>용어 현실화 (도장→서명)</p> <p>진도평가 내실을 위해 확인사항 추가</p> <p>연구기자재 관리강화 의견서술 형태로 조정 (중단여부는 평가심의회의결사항임)</p>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세부개발 내용 및 목표치																																																																																
검토의견																																																																																
연구기자재 관리현황	품 명	구적·수량	구입 년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 입 처 (전화번호)	설치 장소																																																																										
계 속	중 단	조기완료																																																																														
()	()	()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세부개발 내용 및 목표치																																																																																
개발관리현황																																																																																
개발진행 관련 특기사항																																																																																
진도검토 종합결과																																																																																
연구기자재 관리현황	품 명	수량	확보 년월일	가격 (천원)	구입/ 제작	설치 장소	NTIS 등록여부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4-5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최종점검표 2. 조사현황 성명 (인) 3. 최종평가 결과 : 총 점 [<input type="checkbox"/>성공, <input type="checkbox"/>실패(성실, 불성실)] 3. 국산화개발 추진현황 4. 연구기자재 사용 및 연구기자재 관리현황 5. 종합평가표 <첨부>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최종평가표</p>	<p>[별지 제4-5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최종<u>현장</u> 점검표 2. 조사현황 성명 (<u>서명</u>) 3. <u>평가 의견</u>: <input type="checkbox"/>개발완료, <input type="checkbox"/>개발미완료 4. <u>국산화 개발현황<전면개정></u> 5. <u>주요연구결과 및 연구기자재 관리 현황</u> <u><전면개정></u> <첨부>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최종평가표<u><전면개정></u></p>	<p>용어명확화 현실화 (도장→서명) 현장점검은 사전확인 업무로 성공여부 및 성실성 평가부적절 (심의회사항) 평가기준을 성공과 실패 로 구분 배점기준 구체화</p>
<p>[별지 제4-7호]</p>	<p>[별지 제4-7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특별평가서 <전면개정></p>	<p>제22조 개정사항 반영</p>
<p>[별지 제4-8호]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현장실태 정밀 조사서 ● 평가 참여자 성명 (인)</p>	<p>[별지 제4-8호] <삭 제></p>	<p>용도 불명확 및 47로 대체가능</p>
<p><신규></p>	<p>[별지 제4-9호]<신설>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재도전 평가서</p>	